

特許出願明細書作成要領

〈中〉

金 永 吉

〈特許廳 審判官〉

一承 前一

2.2.2 實用新案法

法第9條(1考案 1出願) 實用新案 登錄出願은 1考案에 對하여 1出願으로 한다.

2.2.3 實用新案法 施行令

法第3條(1考案 1出願의 要件) 法第9條의 規定에 의한 1考案 1出願의 要件은 物件에 관한 1獨立項을 記載한 出願으로 한다.

2.3 明細書의 記載要領

2.3.1 發明의 名稱

(1) 發明의 內容을 簡明히 表示

發明의 內容은 그 發明의 內容을 簡明히 表示한다.

例 1. 例를 들면 「내연기관의 점화전」으로 하여야 할 것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으로 하여야 할 것을單純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또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 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비누를 製造하는 方法」이라 쓰거나 「요소수지성형품의 製造方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製造方法」으로 하는 등은 잘 못된 것이다. 또한 發明의 內容과 直接關聯이 없는 文字(例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등을 붙이거나 考案者나 出願人의 姓名을 붙

여서 「○○○식 ○○」 「아무게안○○」 등으로 하거나 「發明特許○○」를 使用하여서는 안된다.

例 2. 發明의 內容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은 다방면의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發明의 名稱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것이 특정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여지는데 불과한 때에는 「……의 온도제어장치」라고 하여야 한다.

(2) Category를 明瞭하게

· 物件의 發明인데 方法으로 表現

例) 鉛筆→鉛筆의 製造方法

· 方法의 發明인데 物件으로 表現

例) 비누제조방법→비누

(3) 同一한 Category→1群의 發明

· 2개의 物件이 相互 不可分인 경우

① 컵과 술병←컵이 달린 술병

② 라디오와 선풍기←라디오가 부착된 선풍기

③ 송신기와 수신기←송신기를 겸한 수신기

④ 플럭과 콘센트←플럭을 겸한 콘센트

(4) 相異한 Category

· 物件과 方法

① 연필과 그 제조방법

② 축전지 및 그 제조방법

· 方法과 裝置

① 고무신의 제조방법과 장치

② 나비형 밸브의 절단방법과 그절단장치

③ 전사 인쇄방법과 그 장치

④ 컴퓨터 제어방법과 제어회로

· 物件, 方法 및 裝置

① 건전지, 그 제조방법 및 장치

건전지, 건전지의 제조방법 및 장치

② 손목시계 케이스, 그 조립방법 및 장치

※ 청구범위 기재 사례

※본사례는 청구범위 기재요령을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명세서 기재순서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실제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등록청구범위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고안의 명칭 : 커피포트

· 등록청구의 범위

1. 포트체 (1) 저면에 내부로 돌출되는 요삼홈 (2)을 형성하고, 전열기 (3)의 중앙에는 가열부(4)를 돌출시켜 발열체(5)를 내설하고 외곽에는 가열부(4)보다 약간 높게 외곽테(6)를 형성하여 포트체(1)와 전열기(3)를 삽탈할 수 있게 함을 특징으로 한 커피포트.

2. 제1항에 있어서 요삼홈(2)과 가열부(4)를 원형으로 한 것. (종속항)

3. 제2항의 가열부(4)와 요삼홈(2)이 구형으로 된 것.

· 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포트체 바닥 내면을 돌출시켜 이에 전열기를 삽탈할 수 있게 한 커피포트에 관한 것이다.

종래 포트는 바닥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 전열기와 일체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열효율이 낮고, 세척시 전열기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취급상 불편한 점이 많았다.

본 고안은 종래 이러한 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포트체 저면에 요삼홈을 형성하여 이에 전열기의 가열부를 삽탈케 함으로써 열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물론 포트를 세척할 때에는 전열기에서 포트체만 분리하여 세척함으로써 전열기 내에 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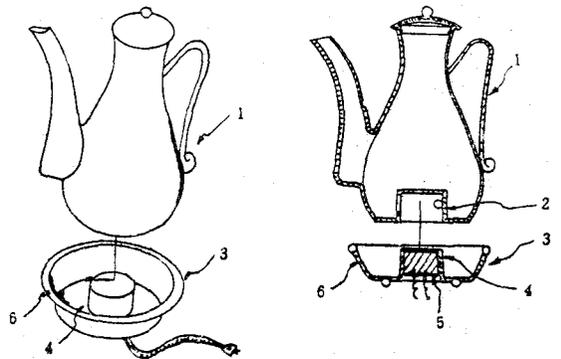
포트체(1)저면에 내부로 돌출되는 요삼홈(2)을 형성하고, 전열기(3)의 중앙에는 상기 요삼홈(2)에 삽탈되도록 가열부(4)를 돌출시켜 그 내부에 발열체(5)를 내설하고 가열부(4)의 외곽에는 외곽테(6)를 가열부(4)보다 약간 높게 형성하여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물을 끓이고자 할 때는 전열기(3)상부에 포트체(1)를 재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때는 전열기(3)의 가열부(4)가 포트체(1)의 요삼홈(2)에 삽입되어 가열시키는데 요삼홈(2)이 포트체(1)내부로 돌출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평면적 가열이 아니고 입체적 가열을 할 수 있어 가열면적이 크게 증가되고 측면으로의 열 발산 손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여 가열효과를 증대시키는 물론, 물이 일단 끓으면 전열기(3)로부터 포트체(1)만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종래의 것에 비해 가볍고 취급이 용이할 뿐 아니라 세척하기에도 편리하며, 또 전열기(3)는 별도의 콘로로도 이용할 수 있어 여러가지 특징과 장점을 지닌 것이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단면도



2.4 補正書 作成方法

2.4.1 補正書 一般의事項

補正書의 規格 및 紙質

가. 가로 190mm, 세로 268mm크기의 인쇄용지 2급 70g/m²(모조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단 25mm, 하단 15mm, 좌단 20mm, 우단 15mm의 여백을 두고 외곽선을 그어 서식을 作成하고, 그 內容을 記載한다.

다. 文字는 黑色을 使用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한다.

2. ④「주소」란 ⑤「성명」란 및 ⑨「發明의名稱」란은 出願書에 記載된 대로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후에 住所, 姓名 또는 發明의名稱을 變更 또는 更正(따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를 요함)한 때에는 그 變更 또는 更正된 住所·姓名 또는 發明의名稱을 記載하여야 한다.

3. 인감은 出願 당시의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그후 인감이 變更된 때에는 그 變更된 인감을 使用하여야 한다.

4. ⑩「보정할 物件名」란에는 補正할 書類名 또는 物件名과 明細書의 補正할 項目을 記載하여야 한다.

例:「出願書의 出願人」란, 「明細書의 圖面의 간단한 說明」란, 「圖面」·「見本」등

2.4.2 補正方法

(1) 詳細한 說明

「補正(의견)內容」란에는 ⑫「補正할 物件名」란에 記載된 事項에 따라서 다음의 要領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가. 補正할 物件名이 出願書 또는 圖面인 경우에는 完全하게 補正하여 새로이 作成된 出願書 또는 圖面(각각 正本 1통·부분2통)을 보정서에 첨부하고, ⑬「補正(의견)內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한다.

명세서의 전문을 補正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明細書에 있어서 特許請求의 範圍의 項目을 제외한 其他 項目중 일부를 補正하는 경우에는 ⑬「補正(의견)內容」란에 記正되는 당해 項目名과 그 보정문을 補載하고 별지에 그 補正된 項目名과 그 내용전문을 記載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보정문의 예: 發明의 詳細한 說明 “○○”를 “△△”로 한다.

다. 明細書중 特許請求의 範圍의 項目만을 補正할 경우에 있어서 그 전문을 補正하는 때에는 그 전문을 記載한 서면(正本 1통·부분2통 <보정에 의하여 變更된 부분에 밑줄을 쳐야한다>)을 별지로서 첨부하고 ⑬「補正(의견)內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 記載하고 그 부분 補正을 하는 때에는 나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 特許請求의 範圍(以下 “項”이라 한다)의 補正

가. 항이 削除되는 경우

(1) 최초 出願明細書의 항(이미 補正된 항을 포함한다)의 番號를 變更하여서는 아니된다.

(2) 削除되는 項의 番號 다음에 “(削除)”라 표기한다.

나. 項이 정정되는 경우

(1) 최초 出願明細書의 項(이미 補正된 項을 포함한다)의 番號를 變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정되는 당해항의 番號 다음에 “(정정)”이라 표기한다.

(3) 정정되는 부분 밑에 밑줄을 친다.

(4) 항이 2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項의 番號 다음에 그 수를 부기하여 표기한다.

예: (2회정정)—(3회정정)—(4회정정)

다. 項을 신설하는 경우

(1) 최초 出願明細書의 項(이미 補正된 項을 포함한다)의 番號를 變更하여서는 안된다.

(2) 신설되는 項의 番號 다음에 “(신설)”이라 표기한다.

(3) 신설되는 項의 番號는 出願明細書의 최종항의 番號에 이어 표기한다.

(3) 其他

特許法第10條의 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補正할 경우에는 표제를 “補正書(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의 補正)”이라고 記載하고 特許法第10條의 2第3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하는 경우에는 “補正書(特許法第10條第3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補正)”라 記載하여야 한다. —계속—